

만남, 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

제2023-2호

# 축 석 통 신



2023년 3월 2일

## 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

만물이 힘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귀 자녀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시행 방침

-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**20일**로 한다.  
(교외체험학습 유형: 가족동반여행, 친척집 방문, 답사·견학 활동, 체험활동, **가정학습**)
- ②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.  
(단,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)
- ③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**3일**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- ④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**7일** 이내에 제출한다.
- ⑤ 학교의 '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'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 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'미인정 결석'으로 처리한다.
-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 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- ⑦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한다.

### 2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

단계	주체	내용
체험학습 신청서 제출	보호자	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<b>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</b> 제출
신청서 검토 및 결재	학교	학교장 결재
허가 여부 통보	담임교사	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허가 여부 통보 (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)
교외체험학습 실시	인솔자 및 학생	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(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여부 확인)
보고서 제출	학생 및 보호자	교외체험학습 <b>종료 후 7일 이내</b> 담임교사에게 제출 ※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요청

※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

2023년 3월 2일

축 석 초 등 학 교 장